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14 선고 2021가단588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9. 14.

주 문

1. 경북 고령군 C 대 162㎡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4. 10.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19. 11. 11. 접수 제101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제1항 중 ‘2019. 11. 11.자’는 ‘2014. 10. 11.자’의 오키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권성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기업부실채권 매매 및 매입자산의 관리, 회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 소외 D에 대한 채권이 최초 소외 E 주식회사(이하 "1차 양도인"이라고 한다)로부터 발생하여 소외 F 주식회사(이하 "2차 양도인"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G(이하 "3차 양도인"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H(이하 "4차 양도인"이라고 한다)에게 순차 양도된 후 최종 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어 소외 D에게 양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채권자입니 다.

나. 피고의 지위

피고는 소외 D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경북 고령군 C 대 1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입니다.

2. 청구권의 발생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D은 1차 양도인으로부터 2011. 9. 28.자에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그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5 지분을 2019. 11. 11.자에 협 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사해행위이전에 성립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전행위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할 것입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채무자 즉, 소외 D의 사해의사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다 할 것이나 이러한 사해의사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소극적인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매매, 증여, 협의분할 등)의 경우 이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사실상 추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소외 D이 소외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소외 채무자(D)의 무자력 및 피고의 악의

또한 소외 D의 무자력 즉,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소외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할 당시 채권자와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였으므로 소외 D은 무자력 상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익자 즉, 피고의 악의에 관하여는 수익자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 D과 피고는 "모자관계"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는 소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소 결

그렇다면 소외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사해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원물

반환에 갈음하여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피고는 원물반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